

7. 都市公園法施行令中改正令(案) 立法豫告

건설교통부공고 제1997-213호 1997. 6. 17

주요 골자

- 가.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시 첨부서류를 축소조정함.
- 나. 공원안에 기존건축물의 증축을 종교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보육시설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고, 증축되는 연면적은 건축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시설 연면적 범위내에서 2층까지로 함.
- 다. 현재 공원안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지하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, 나대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공원조성전까지에 한하여 지상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함.
- 라. 시설녹지안에서 점용허가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녹지안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
개정 이유

도시공원안에 기 설치된 보육시설의 증축·개축을 허용하고, 공원 및 녹지안에서의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등 도시공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